



일리노이주  
인권부서

# 일리노이주의 인권법에 의한 차별고소신청

ILLINOIS DEPARTMENT OF  
**Human Rights**

법율이 제공하  
는것들

차별고소를 신  
청하는 방법

# 일리노이주 인권부서

일리노이주인권부서(“IDHR”)는 일리노이주 인권법 (“Act”)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다.

## 미션

일리노이주인권부서의 미션은 불법 차별대우로부터 일리노이주의 모든 거주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정부조직으로서 모든 거주민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적극적인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 법율은 무엇인가?

일리노이주 인권법에서는 고용, 재무신용, 공공시설 및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과 성희롱 포함), 출신국가, 혈통, 연령, 보호 상대 명령, 결혼 여부,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직장에서의 체포 기록, 가구 가족 상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 법율은 모든 고용기간과 조건에 의한 차별을 보호한다. 고용, 선발, 승진, 전직, 급여

임기, 해고 및 처벌이 포함된다

**평등주택(부동산 거래):** 주택 혹은 상업용 부동산의 판매 혹은 임대과정의 차별은 불법이다. 이런 차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거래의 기한, 조건 혹은 특권을 수정한다.
-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주택제공을 거부한다.
-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합리적인 주택/개장을 거부한다.
- 임대할수 없거나 자산매각의 오보

**금융신용:** 모든 일리노이주에서 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담보, 금융 혹은 개인대출 및 신용카드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공공장소:** 공공장소의 모든 곳에서 거래, 소비, 숙박, 오락, 혹은 교통도구와 같은 시설, 개인재산과 서비스의 사용을 차별하는것은 불법이다.

**고등교육에서의 성희롱:** 본 법률은 공공 혹은 사립 교육 기관에서의 중역, 교직원, 행정요원 혹은 조교로부터의 학생에 대한 성적인 성질의 접근 혹은 성적인 청탁 요청으로서 이러한 행동들이 학생의 수행 능력을 방해하고 위협적이고 적의적이거나 불쾌한 환경을 일으키거나 교육적 혹은 특별활동의 기회의 조건이 되는 경우를 금지한다.

다음의 경우 IDHR로 차별에 대한 공식 기소를 행할 수 있다:

- 1) 개인, 거래, 고용주, 노동단체, 고용기관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
- 2) 임의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다.
- 3) 5가지 보호범위의 하나이면서
- 4) 차별행위가 발생한후 될수록 빨리 인권부문에 고소하며 차별이 발생한 당일부터 180일 이내에 고소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에 관한 문제는 1년내에 고소할수 있다.)



## 고소방법

만약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IDHR직원한테 반영하여 함께 당신의 불안에 대하여 논의 할수 있다. 그들은 당신과 면담하며, 만약 당신이 진술한 내용이 법률 내에 포함된다면 당신이 싸인하고 공증한 고소를 기초할것이다. IDHR직원이 고소하는것을 권장하지 않지만, 차별과 고소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릴것이다. 그리고 IDHR는 다른 적합한 기관에 당신을 소개시켜준다

**고소를 제기할때 우리한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 차별고소를 제기할때, 될수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름, 우편주소, 해당시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본인이나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전화 받는 이의 이름을 제공하도록 한다.
- 당신한테 차별대우를 한 고용주, 기관, 개인 혹은 기타 기관의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일 최근에 발생한 차별정보를 제공한다
- 증인의 성명, 연계방법과 해당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고소는 기술방식, 전화 혹은 면담으로 신청할수 있다. 양식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되어진다.(면담으로 신청할 경우, 모든 방문자는 촬영이 된다는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방문 이미지ID가 있어야 한다 ) 고소의 사본과 정보요청은 10일 내에 피고소인(당신한테 차별대우를 한 개인 혹은 기관)한테 전달된다.



## 조정

조정 회의는 조사의 대리격으로 기소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조정은 비공식적이고 무비용의 과정으로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양 당사자”)는 자의적으로 훈련되고 공인된 IDHR 조정자와 만나 기소의 가능한 해결점을 모색하게 된다. 조정 과정은 기밀로 처리되며 전체 조정 해결 회의는 IDHR 시카고 사무실에서 가지게된다. 조정 중(4시간 이상 소요) 변호사는 자문 역할로 참석이 가능하게 된다. IDHR 조정자는 양 당사자에게 결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해결 동의서의 수락은 답변자의 죄의 인정을 의미하지 않게 된다. 해결안의 조건은 금전적 및/혹은 비금전적 구성을 띄울수 있다. 조정 해결안이 이루어진 이후 양 당사자는 짧은 기간안으로서 해결안을 수락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해결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소는 조사 단계로 이행되게 된다.

## 조사

만약 쌍방이 조정에 참가하지 않거나 혹은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조사단계로 들어간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IDHR 조사직원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IDHR도 상응한 문서와 사람을 호출할 권리가 있다.

IDHR의 임무는 고소에 대해서 중립적인 조사를 진행하는것이다. 정황에 의하여 조사원은 증인과 연락하여 면담하며 쌍방과 상응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피고소인은 고소와 상관되는 모든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고소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보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IDHR에 보복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진실 찾기 회의

쌍방은 진실 찾기 회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 회의는 IDHR 조사원의 조직하에서 면담형식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완전한 조사 혹은 조기 지원조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각자는 신고와 피신고의 응답을 진술한다. 충분한 이유가 없이 진실 찾기 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일방은 고소인 자격을 취소하거나 혹은 피고소인으로 목인한다. 진실 찾기 회의를 진행한 후 “출정통지” 단계에 들어가면 각자는 법율고문을 배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엄격한 충고를 하며 직접지식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회의에서 증명할 수 없으며 임의의 일방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제출할 수 없다.

쌍방은 변호사에 대해 응답을 할 필요가 없다.

조사원은 쌍방이 모두 충분하고 공평하게 그들의 진실과 증거를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법율고문을 배동하지 않은 고소인은 친구 혹은 친척과 함께 회의에 참가하여 건의 혹은 정신적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고소에 직접지식이 있는 상황에서만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서 고소인은 통역원을 배동할 수 있다. 증인도 진실 찾기 회의에 참가할 수 있지만 참가여부는 조사원이 결정한다.

조사자는 양 당사자에 질문을 행하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답변하고/혹은 상대 당사자의 답변을 반박하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문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차례로 가지게 된다. 조사자는 기소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문서를 식별하고 요청할 수 있다.

조사자는 진술서와 답변에 대한 비공식적인 메모를 시행한다. IDHR 규제에 따라 이들 조사에 관한 메모는 특별 격리되어 당사자들에 제공되지 않게 된다. 회의는 공식적인 청문회가 아니며 IDHR로부터 속기 기록이 작성되지 않는다.

조사자가 사실 인정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사자는 자료, 증거를 고소인과 피고소인들로부터 각기 수집하게 된다.

## 발견과 결과

조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쓰는데 이 보고서는 “법율을 위반한 대량의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설명한다. “대량의 증거”를 찾아낸 것은 고소인이 일노주이주 인권위원회 혹은 적당한 주 순회법정앞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대표고소인이 공청회를 조직하는 기관)이 회의에서(위원회 혹은 순회법원) 증언을 듣고 접수하며, 불법차별의 발생여부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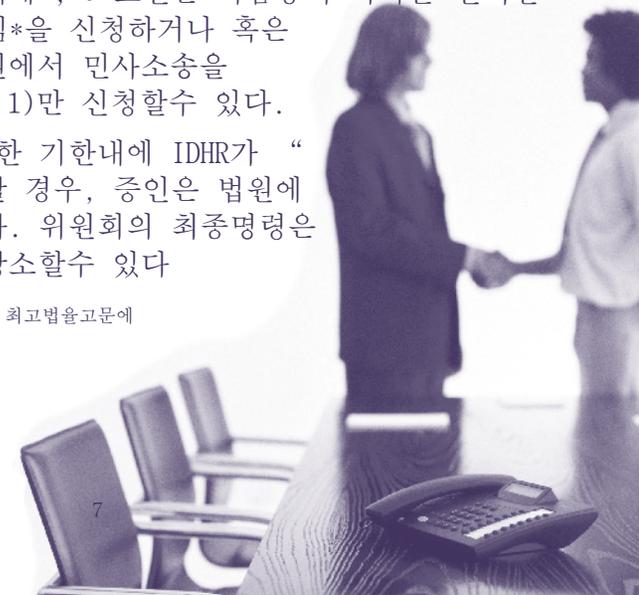
만약에 대량의 증거를 찾았다면, 고소인은 아래중의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1) IDHR 대표고소인에게 (법율이 지정한 기한내에) 위원회에 고소장 제기를 요구, 혹은 2) 적당한 주 순회법원에(법율이 지정한 기한내에) 민사소송을 제기

주택문제, 혹은 고소인이 IDHR한테 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를 요구, IDHR 변호사가 쌍방을 도와 소송을 해결, 혹은 “조정” 한다. 만약에 조정협약이 달성되지 않으면, IDHR 대표소송인이 위원회에 공민권리 침해소송을 제출한다. 고소인은 위원회에 증거제출을 책임진다.

IDHR가 “대량의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고소는 끝난다. 법율이 지정한 기한내에, 고소인은 다음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1)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혹은 2) 적합한 주 순회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한다(주택문제는 1)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법율이 지정한 기한내에 IDHR가 “위약 통지”를 제출할 경우, 증인은 법원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최종명령은 적합한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08년1월1일 전에 제출한 소송은 최고법율고문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 과정 지속시간

인권법은 완전한 고소는 365일내 혹은 쌍방이 협의를 달성한 연장날짜내에 모든 절차를 완성할것을 요구한다.(주택고소는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하고 100일내에 완성해야 한다.) IDHR는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일체 노력을 해야 한다. 조사원은 조사를 완성하기 위해 시간을 연장할수 있다.만약에 쌍방중의 일방 혹은 쌍방이 연장협의를 거절하고 365일내에 IDHR가 아무런 진실 혹은 면제의 기록을 찾지 못하면, 고소인은 90일내에 위원회에 소송을 제출 혹은 적합한 주 순회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만약에 고소인이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혹은 주 순회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주택문제는 연장할 필요가 없다)

## 일리노이주 인권위원회

위원회는 IDHR한테 제출한 고소인의 증언회를 조직하는 독립적인 주 기관이다. IDHR는 위원회에서 어느 일방의 대표도 아니다. 최고법정과 인권위원회앞에서 쌍방은 법률대표를 통해 합리한 소개 혹은 보호를 받을수 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고소인이 이기면 , 고소인을 “전부” 가 되기하기 위해서 , 법정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제출한다. 보상은 체불임금 재발급, 상실한 이익, 개인문서 청산, 정신적 피해보상, 초빙, 진급, 복직, 복직이 불가능할때의 사전지불 및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징계성 처벌, 즉 고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처벌은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다.

## 연방기관과 연방법정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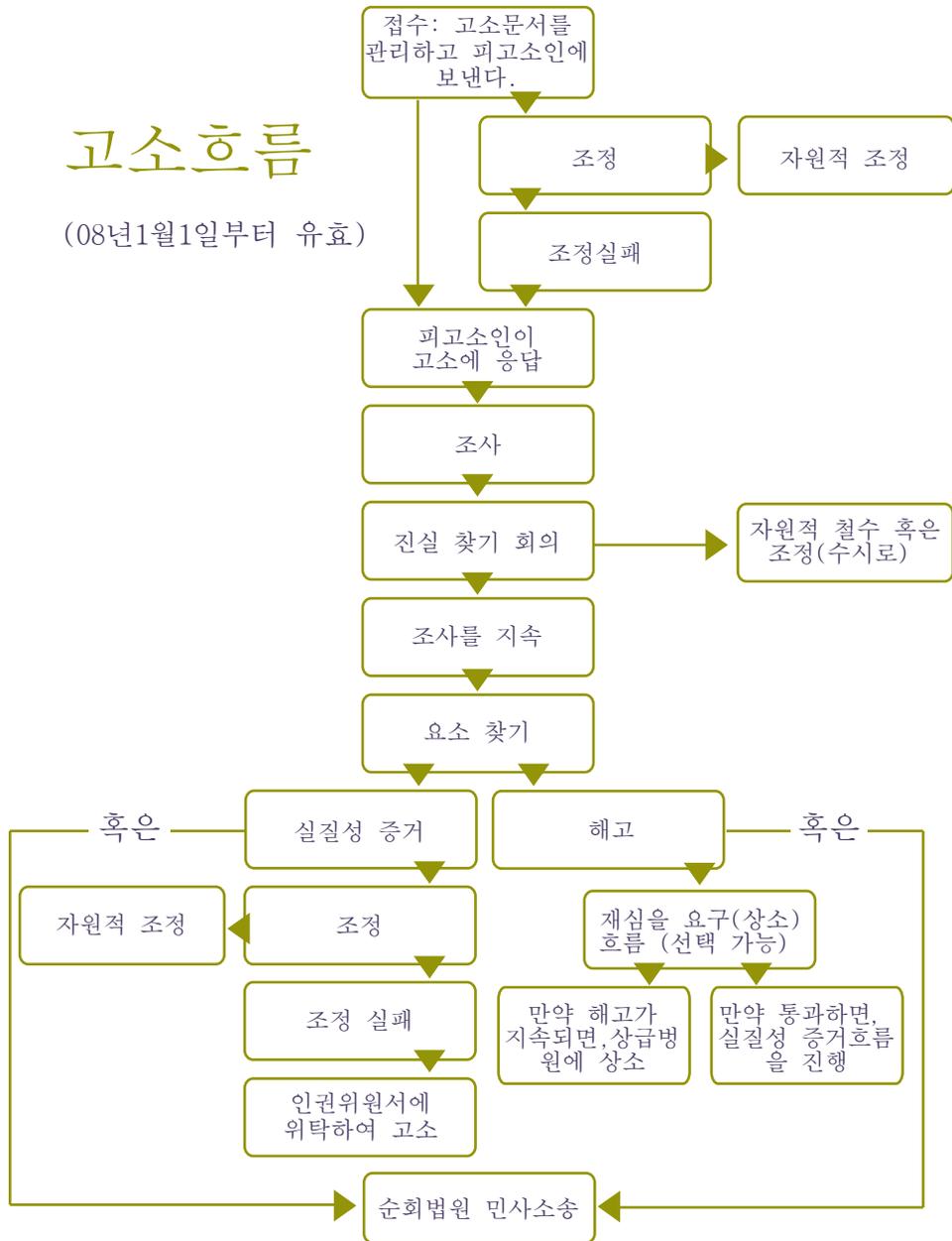
고소인의 연방권리를 보호하기위해서, IDHR자동으로 연방평등취업기회위원회 (EEOC) 에서 지원하는 자격있는 취업을 선택한다. 그리고 EEOC기관의 근무공유협의하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주택문제는 미국주택과 도시발전부서에서 선택한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출하기 위해서, 취업고소중의 고소인은 수시로 EEOC에 의하여 “소송권공고” 를 제출할것을 요구받을수 있다. 만약에 “소송권공고” 제출을 요구 받았다면 , IDHR에서 퇴출할것을 권장한다. 같은 상황에 IDHR과 연방법정에 제출하고 또 IDHR에서 퇴출하지 않았다면, IDHR는 당신의 조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퇴출을 결정하기전에, 변호사와 이것이 최선의 결정이 옳은지 아닌지를 자문하기를 권장한다. IDHR가 중립역할을 유지하면, IDHR대표는 고소인 혹은 증인에게 법률건의를 할수 없다

# 고소 흐름

(08년1월1일부터 유효)



# 기타 IDHR 제공 서비스

**훈련:** 훈련 및 개발 기관(“기관”)은 일리노이에서 회사와 직장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심을 부각시키기 위한 훈련을 수행한다. 실생활 상황을 사용하여 공인 훈련가는 공평한 고용법과 수행, 보다 나은 이해를 통하여서의 분쟁의 해결 방법과 성적 희롱 방지와 같은 비차별적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게된다. 제출물이 독립 연구 및 근무 중 참고 도구를 위해 제공된다. 본 기관은 HR 인증 기관에 의하여 공인되었으며 HR 인증서를 위한 연수 교과목을 제공한다. 공공 및 개인 연수가 제공되어진다. 현장 연수의 경우 비용이 따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연수 일정을 위하여 (312) 814-2477로 연락하도록 한다.

**차별 시정 조치 시행:** 주 기관 연결부는 주 중역 기관에 동등한 고용의 기회와 차별 시정 조치의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살피고 이를 제공한다. 본 부서는 또한 장애 고용인을 위한 주 중개기관 위원회에 대한 기관을 대표하고 있다.

**공공 계약:**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갖춘 이와 회사는 제출일자를 선행하는 1년 기간 어느 중에서나 일리노이 주 기관과의 사업을 희망할 경우 공공 계약부를 통하여 유자격 입찰자 번호를 등록 받아 동등한 고용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IDHR 규칙과 규제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받도록 한다.

**교육 및 봉사 활동:** 봉사활동 요원은 IDHR의 공공 관계 기관이다. 공공의 인권에 대하고자 알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서 이들 요원은 지역사회와 시민 기관을 위한 워크샵, 연수, 이벤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한 마스크와 일반 공공으로부터의 정보 요청에 답변을 제공한다.

ILLINOIS DEPARTMENT OF  
**Human Rights**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 인권부서**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 오전 8:30 ~ 오후 5:00

허용 면접: 월 - 목, 오전 8:30시 - 오후 3시

(금요일은 면담을 하지 않는다)

사이트: [www.state.il.us/dhr](http://www.state.il.us/dhr)

**시카고:**

60601일리노이주 시카고

10-100빌딩 랜돌프거리 서쪽100

제임스 R. 톰슨 센터

(312) 814-6200 또는 (800) 662-3942

(866) 740-3953 (TTY)

(312) 814-6251 Fax

**스프링 필드:**

62704 일리노이주 스프링 필드

학원거리 남쪽222 1-1

(217) 785-5100

(866) 740-3953 (TTY)

(217) 785-5106 Fax

**메리언:**

62959 일리노이주 메리언

메인스트리트 서쪽2309

(618) 993-7463

(866) 740-3953 (TTY)

(618) 993-7464 Fax

본 팸플렛은 일리노이 인권부서의 주요 서비스 및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일반 안내서이다. 본 안내서는 차별에 대한 질문을 전체 포괄하지 않으며 개별 사례는 이와 달리 적용될 수가 있다. IDHR은 각 사례에 적용되는 규제 및 절차를 갖추고 있다. 본 팸플렛에 관한 문의사항은 근처 IDHR 사무소에 연락하도록 한다.

미국 장애인 조항, 1973년 재활 조항의 504 조항, 일리노이 인권 조항을 따라 IDHR은 전체 프로그램이 유자격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DA 조정자는 규제 준수 사항의 자격조건에 대한 기타 내용을 (217)785-5119 (음성) or (866) 740-3953 (TTY).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 당국 제작  
(102014-KOREAN-WEB)